

# 신한저축은행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상품설명서

- ♦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'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명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
■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#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<u>실제 계약 내용은</u>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따릅니다.
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구 분	내용	
가입대상	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<b>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</b>	
가입금액	▷ <b>최저</b> : 1원이상 ▷ <b>최대</b> : DB형-제한 없음 , <b>DC형/IRP형-5천만원까지</b>	
가입기간	▷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1년, 2년, 3년 ▷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	
	▷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	

>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※ 재예치시마다 재예치시점의 이율로 변경 적용됨

**기본이자율** (연이율, 세전)

[2023.8.1기준]

구분		3개월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
DB형	연이율	2.2%	2.2%	4.3%	3.9%	3.8%
	연수익율	2.204%	2.210%	4.385%	4.049%	4.018%
DC/IRP형	연이율	2.1%	2.1%	4.0%	3.6%	3.5%
	연수익율	2.103%	2.109%	4.074%	3.726%	3.684%

DC /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보호여부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
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

DB 비번호

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 ▷ 신규(재예치)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

# 이자계산방법

구 분		이자계산식		
볼리식 (월복리)	월 단위	원금 x {(1+이율/12)-1} (n 은 경과월수)		
	일 단위	(원금 + 월복리이자) x 이율/365 x 일수		

신규일 만기일 [이자계산 산식] 원금 X {(1+약정이율/12)□ -1} (n은 경과월수)

#### 이자지급방법 ▷ 만기일시지급식(월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▷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 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▷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 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 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 만기처리방법 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 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) 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 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▷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▷ 신규일 및 최종예치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(원미만 절사) 예치기간 이 율 1 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(0.2%) 1 개월이상 ~ 12 개월미만 | 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%] 12 개월이상 ~ 24 개월미만 ਊ적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%] 일반중도해지 24 개월이상 ~ 36 개월미만 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%] 이자율 (연이율, 세전) 단.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 [2023.8.1기준] 약정이율 x 90% x 약정이율 x 80% x 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경과월수/계약월수 경과월수/계약월수 보통예금이율(0.2%) 계약일 1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 는 경우 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5. 수탁자의 사임 사유 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. 수수료의 징수 10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▷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적용

6개월이상~ 1년미만

가입당시

6개월제 약정이율

※ 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

1년이상~2년미만

가입당시

1년제 약정이율

2년이상~3년미만

가입당시

2년제 약정이율

6개월미만

가입당시

3개월제 약정이율

특별중도해지

이자율

분할해지 (일부해지)	<ul> <li>▷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.(단, 예금 신규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)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.</li> <li>1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/li> <li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</li> </ul>
계약의 해지	▷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
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사항	▷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</b> 등이 등록될 경우 <b>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b>
제한 사항	▷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<b>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</b> 지급정지, 상계등은 불가
위법계약 해지권	<ul> <li>□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을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□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<ul> <li>□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□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8일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예금해지시불이익	▷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연계.제휴서비스	▷ 해당사항 없음

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시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기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교세) 저축으로 기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시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압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■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: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신한 저축은행 고객센터(1644-7777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savings.com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⊙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 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
※ 출 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